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 목 적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25. 11. 4.(화) ~ 11. 17.(월) <14일간>

3. 대상기관 : 35개 기관

위원회 선정 (7개)	본회의 의결 (28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실 ○ 복지실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 어린이병원 ○ 은평병원 ○ 서북병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실 소관(11)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제3호 종로 거점형 우리동네기움센터. 서울특별시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기움센터. 서울특별시립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꿈마루 서울시립학대피해 아동쉼터

위원회 선정 (7개)	본회의 의결 (28개)
	<p>○ 복지실 소관(1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복지재단 - 서울특별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서울특별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서울광역자활센터 <p>○ 시민건강국 소관(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국 민 의 힘	김 영 옥	수석전문위원 : 임영미 의사지원팀장 : 주승원
부위원장	국 민 의 힘	신 동 원	전 문 위 원 : 김소은 행 정 6 급 : 박현우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오 금 란	사무운영7급 : 심선영 행 정 7 급 : 김수은 행 정 8 급 : 조용민
위 원	국 민 의 힘	강 석 주	입법조사관 : 우현재
”	국 민 의 힘	도 문 열	입법조사관 : 도미화
”	국 민 의 힘	신 복 자	입법조사관 : 신현대
”	국 민 의 힘	이 성 배	입법조사관 : 김진영
”	더불어민주당	김 인 제	입법조사관 : 김종훈
”	더불어민주당	이 병 도	정책지원관 : 박서영
			정책지원관 : 양옥수
			정책지원관 : 백순정
			정책지원관 : 양희수
			정책지원관 : 권민진
			속기 및 녹취요원 3명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1.4.(화)	행정사무감사 준비		
11.5.(수) 10:00	〈여성가족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위원회 회의실	
11.6.(목) 10:00	〈여성가족 관련 기관〉 -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제3호 종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특별시 제5호 성북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특별시립 꿈나무마을 초록꿈터, 서울동남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어린이미래활짝센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남부여성발전센터, 꿈마루 서울시립학대피해 아동쉼터	위원회 회의실	
11.7.(금) ~11.9.(일)	감사결과 자료정리		
11.10.(월) 10:00	〈복지실〉 〈서울시 복지재단〉	위원회 회의실	
11.11.(화) 10:00	〈복지 관련 기관〉 - 서울특별시립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 서울노인복지센터, 서울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서울특별시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서울특별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 서울광역자활센터	위원회 회의실	

일 시	감사대상기관	장 소	비고
11.12.(수)	감사결과 자료정리		
11.13.(목) 11:00	〈시민건강국〉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위원회 회의실	
11.14.(금) 10:00	〈특수 법인〉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직영 병원〉 -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위탁 병원〉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건강 관련 기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위원회 회의실	
11.15.(토) ~11.17.(월)	감사결과 자료정리		

※ 상기 일정과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자료 확인 ◦ 현황 보고·청취 ◦ 시책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민원처리 현황 -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등 -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
여성가족실 및 위탁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인식 제고 및 여성 사회참여 증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저출생 해소, 보육 및 돌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아동·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성평등가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재단 및 민간위탁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여성가족 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의 경영성과 및 재정 자립도에 관한 사항 - 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 관련 정책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여성의 사회참여 및 교류, 여성복지 증진, 여성 관련 시설 연계, 민간과의 협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 여성일자리 활성화 및 일자리기관 총괄 지원에 관한 사항
복지실 및 위탁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 재해구호, 보훈 업무에 관한 사항 -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 장애인·노인복지 등 복지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 노숙자 보호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 고독고립 해소 관련 사업 현황에 관한 사항 - 각종 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복지재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의 경영성과 및 재정 자립도에 관한 사항 - 재단 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재단 운영기반 강화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심의사업에 관한 사항 -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기관명	감사방법	주요감사사항
시민건강국 및 산하사업소 · 위탁시설	◦ 감사자료 확인 ◦ 현황 보고·청취 ◦ 시책 질의·답변 ◦ 서류 또는 현장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병원 운영실태·시설 현대화, 전염병 예방·관리 등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시민 보건 수준 및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등에 관한 사항 - 시민고객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보건환경 연구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의약품 및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 환경실태의 체계적 조사·분석 관리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위생검사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에 관한 사항 - 시책 연구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사항 등
서 울 의 료 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사업 내실화, 의료수익 증대노력 등 자립경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진료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및 인근 산업체와 진료연계에 관한 사항 - 종합건강 진단 등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등
위탁병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의 합리적 운영과 의료수익 증대노력 등 자립경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진료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노인환자 진료, 장애인 구강진료 등 특수진료에 관한 사항 - 시민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 가. 2024. 11월 ~ 2025. 10월까지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현황(각종 기금 포함)
- 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현황(각종 기금 포함)
- 라. 2024. 11월 ~ 2025. 10월까지 처리한 각종 민원처리 현황
(인·허가, 진정, 청원, 이의신청 등 요지 및 처리내역)
- 마. 2024. 11월 ~ 2025. 10월까지 행정사무 감사 및 각급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
(국정감사, 감사원, 행정안전부, 중앙부처, 자체감사 등)
- 바. 소관업무와 관련한 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폐지 현황
- 사. 2025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집행 현황
- 아. 보건복지위원회 요구 자료
- 자.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등

8. 감사자료 제출요구

-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별첨 2」 서식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기재한 후 해당 감사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에게 2025. 9. 16.(화)까지 제출
- 다. 보건복지위원장은 목록을 수합하여 의장(의사담당관 경유)에게 2025.9.22(월)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 및 교육감에게 감사 개시일 17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9. 감사자료 제출

피감사기관은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감사자료를 행정 사무감사 개시일 17일 전까지 각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에게 서면으로 직접 제출

10.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 (1) 감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 (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 여성가족실장, 복지실장,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병원장, 은평병원장, 서북병원장
 - 행정사무감사 전체 피감기관의 기관(시설)장
 -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 운영 법인 대표 : 선정 중
 -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9조를 적용함
- (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적용
 -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제8조)
 - 과태료 부과(제9조)
 - 고발 및 준용사항(제10조 및 제11조)

다. 감사 진행순서(예시)

-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2) 위원장 인사

- (3) 피감사기관 선서 : 선서문 별첨
-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5) 업무현황 보고·청취
- (6) 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등)
-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

- ① 감사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에게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4) 주의 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 ①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5) 공개 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현지확인, 서류제출 등의 요구 및 통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①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한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하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요구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1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7) 감사계획서의 변경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2항에 따라 감사의 범위는 위원회의 감사계획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변경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11.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가. 방침

- (1) 감사 결과보고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2)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 방법

-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 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 (2) 감사 직후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수합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
- (3) 보건복지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 채택하여 2025.12.5.(금)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 (4)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
- (5) 본회의 의결

- ※ 첨부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서식 1부
3. 감사 결과 의견서 1부.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감사 결과 의견서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사항		